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

1. 검토 배경

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직선으로 선출됨

- 박○○ 판사(연수원 31기, 파산부 근무)

■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

- 특히 상반기에 출범 예정인 사법행정위원회와 시너지 효과 있을 수 있음

■ 향후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의 기본 방향을 결정할 필요 있음

- 2014년 김○○ 판사의 의장 재직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됨 ⇨ 진지한 대응 방향 검토 필요

2. 현황 개관

■ 선거 결과

- 재적 133인
- 출석·투표 102인(투표율 76.7%)
- 박○○ ⇨ 65표(득표율 63.7%), 정○○ ⇨ 35표(34.3%), 무효 ⇨ 2표

■ 결과 분석

-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인원 분포
  - 민사단독 87인, 형사단독 22인, 파산단독 22인
- 고려 사항
  - 박○○ 측 우호 세력
    - 파산단독(현원 23인) ⇨ 현재 박○○ 판사가 파산단독임

■ **신청단독**(현원 8인) ⇨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

– **정○○** 측 우호 세력

■ **민사재정단독**(현원 6인) ⇨ 현재 정○○ 판사가 민사재정단독임

■ **형사단독**(22인) ⇨ 행정처 심의관 출신 법관 등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

● 분석

– 우호 세력은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임

■ **박○○ ⇨ 약 21표** 예상

■ **정○○ ⇨ 약 19표** 예상

– 따라서 나머지 득표는 대부분 민사단독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임

■ **박○○ ⇨ 약 44표** 예상(73.3%)

■ **정○○ ⇨ 약 16표** 예상(26.7%)

– 또한 **우호 세력의 투표**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, 기존에 형성된 생각 등에 따라 **사전에 그 향방이 결**정되어 있었을 것 ⇨ 결국 중앙지법 단독판사 그룹의 여론의 현재 위치는 위에서 본 나머지 득표 상황을 참고하여야 함

■ [착안점①]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

■ [착안점②] **제한된 상황과 정보하에 형성된 여론**이고 **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**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

3. 전망

■ 향후 박○○ 판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

● 1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

● 2사법행정위원회 구성·운영에 영향력 행사

● 3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

■ 1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

- 어쩌면 박○○ 판사는 당면 현안(위 ②,③의 목표)에 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**사법행정 당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이 지점**임

  - 2014년 김○○ 판사의 의장 당선 후 **2015년에는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** ⇨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, 그 결과 **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**하였음

  - **2014년의 의장 직선은 단발성·일회성 해프닝으로 인식될 여지**가 있었음 ⇨ 그러나 **올해의 의장 직선으로 말미암아 이제 향후 전국 법원의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당연시될 가능성**이 열렸음

- **결국 좀 더 거시적·장기적 안목**에서 보았을 때 당장 올해 박○○ 판사가 당면 현안에 관하여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**이와 같은 체제가 상시화되고 당연시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**임

  - **판사회의 실질화**를 통하여 **법관들이 쉽게 세력화될 우려**가 있음

☑ 법관의 세력화를 추진하는 측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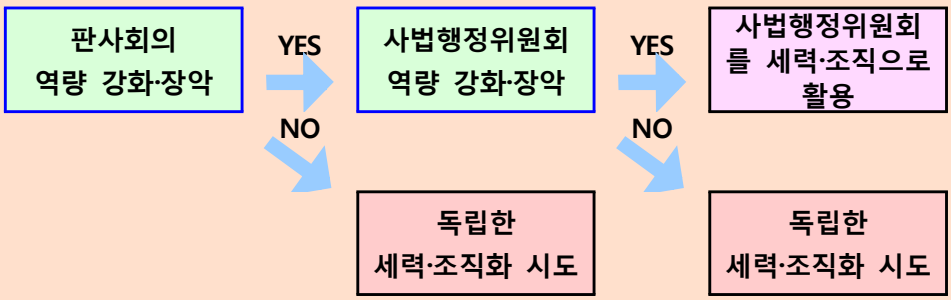

- 이를 위하여 박○○ 판사는 **일단 법관들의 관심이 많은 각종 소형 이슈에 집중할** 것임

  - **2014년 김○○ 판사 당시에도 4월에는 자기소개서 제출 문제를, 7월에는 통계 회람 문제를 제기**한 바 있었음 ⇨ **법관들의 상당한 호응**을 유도

  - 그밖에도 **단독판사 밥조에 순회적으로 참석하여 교류**하는 등 의장으로서 **친분과 친밀도를 높이고 존재감을 과시**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것임

■ ②사법행정위원회 구성·운영에 영향력 행사

- 당초에 **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로 예상**되었던 목적임

> ☑ **인권법 커뮤니티에서 논의된 '법관의 사법행정참여방안에 관한 소고' 말미 부분**
>
> ▶"4. 2016년 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
>
> 가. **판사회의 실질화, 정례화**를 위한 각급 법원 내규 개정 작업 및 직급별 판사회의 정례화
>
> 나. 판사회의를 통한 **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건의 및 위원회 위원 참여**
>
> 다. **판사회의의 기관 (의장, 간사, 운영위원) 선출방식에 있어서 직선제 도입 및 후보 참여**
>
> 라. **전국법관회의 창립**을 위한 연구 및 기초 작업"

- **위원 후보자 추천과 안건 제출 등에 영향력 행사**를 시도할 것임

  - 사법행정위원회의 **공식적 추진 일정** ⇨ 4. 1.까지 위원 추천, 4. 12.까지 안건 제안, 5월 중순경 최의 개최

  - [착안점] 이미 공지된 일정에 따르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아니함 ⇨ **유리한 요소**로 삼아야 함

■ 3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

- **법관들의 희망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방식**으로 개정을 추진

  - 특히 법관들이 보임을 꺼리고 있는 **형사단독에 희망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**으로 보임

- 2014년 김○○ 판사의 **의장 재직 당시에도 추진**되었으나 **아래와 같은 이유로 좌절**되었음

  - **무리하게 추진**하였고, **투표 방식도 난해**하여 의사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**투표 결과 부결**됨

4. 대응 방향

가. 전체 기조

■ 적정한 긴장감 유지가 필수적임

● 박○○ 판사에게 불필요한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을 각종 판단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함

–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의장 직선제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음

나. 구체적 대응

■ 1'단독판사 의장 직선의 연례화'에 대한 대응

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종 소형 이슈 사전 제거

– 자기소개서 제출, 통계 회람 등 박○○ 판사가 법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존재감을 축적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제거 필요 ⇨ 서울중앙지법 수뇌부의 사전 양해·이해를 전제로 함

– 위와 같은 사법행정상 조치를 통한 得보다 전체적으로 보아 법원 운영에 失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 있음 ⇨ '小貪大失'을 豫防

●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 라인의 적극적 활동

– 기획법관의 단독판사 애로사항 청취, 적극적 해결 등 역할 先占 ⇨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협조 필요

● 불필요한 존재감 부여에 항시 유의

– 각종 행사에서 단독판사 의장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이미지 제고의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은 지양할 필요 ⇨ 단독판사 의장직이 법관들 사이에 다소간에라도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(내년 이후도 고려)

–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의 단독판사 의장 면담, 회식 등도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음 ⇨ 공식적·비공식적 조력·지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요함

■ 2'사법행정위원회 구성·운영에 영향력 행사'에 대한 대응

● 촉박한 일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

-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원 추천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● 위원 추천에 대한 단독판사 회의 차원의 건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

- 과감하게 無視하는 것부터 受諾하는 것까지 모두 가능
- 실제 추천된 인사의 면면을 보고 판단

■ 3'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'에 대한 대응

● 충분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

- 9월 정기 회의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 ⇨ 사전에 다각적인 정지 작업이 가능

● 법원행정처 차원의 원칙과 대응 논리 마련 필요 ⇨ 현재 기조실과 인사실이 공동 검토 중

- 전국 법원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법리적·정책적인 해석과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임
- 결정된 정책 판단 내용을 각급 법원이 사전에 공유하여야 함

● 미리 법관 사회에 여론 조성 활동이 필요함

- 중요 대응 논리를 사전에 오피니언 리더 법관들에게 주지시키고 판사들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
-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⇨ 선거와 달리 '사전 선거운동'의 부담이 없음, 2014년에 이미 이슈화된 바 있어서 사전에 문제 제기와 논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아니함
- 의장 선출의 경우와 달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의장 선거 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임(끝)